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인의 날 제정 및 운영>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8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외 14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매년 11월 1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 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 ③ ---------- 날 및 전기인의 날의 ----------. ④ 제3항에 따른 ----------.

전기기술인협회는 2004년에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하고 이후 매년 11월 1일에 “전기인의 날” 기념식, 포상, 전력기술진흥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가 명시된 ‘전기의

날'(4월 10일)과 달리 '전기인의 날'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법률상 규정 없이 전기기술인협회가 행사를 개최해 온 '전기인의 날'의 지정 근거와 국가 및 지자체의 기념행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1]은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할 때 고려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서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전기인의 날'이 이미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전기의 날’과 의의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다수 관련 법률에 분산되어있던 전기산업 분야 내용을 총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기의 날’을 기념하는 취지에는 당연히 전기산업에 기여한 전기인에 대한 기념 및 공로 치하도 포함[2)3)]되므로 별도의 법정 기념일로 ‘전기인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7

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예정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